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업종별수협의 해산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하향조정 등〉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66호)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61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업종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 하향조정 등	3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김선교의원안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21.

(3) 회 부 일 : 2025. 1. 22.

2. 서천호의원안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선교의원안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 사업 참여 등으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2. 서천호의원안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7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수협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Ⅲ. 검토의견

1. 업종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 하향조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 최소 인원을 기존의 ‘1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김선교의원안 제108조)’ 또는 ‘7인 미만(서천호의원안 제108조)’으로 하향조정하고, 그 밖에 준용규정에 존재하는 일부 오기를 수정하려는 것임(김선교의원안 제108조·제113조).

[현행법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최소 조합원 수	<u>15인 미만</u>	(김선교의원안) <u>10인 미만</u> (서천호의원안) <u>7인 미만</u>
준용규정의 오기 수정	<u>제84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100인 미만)를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에 대한 준용규정(제108조, 제113조)에서 200인 미만으로 오기</u>	(김선교의원안) 준용규정인 제108조, 제113조에 <u>인용된 지구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를 실제 근거조문(제84조)에 맞게 수정</u> <u>200인 미만 → 100인 미만</u>

1)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자료1] 참조

나. 검토의견

(1) 업종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 하향조정

□ 현행법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업종별수협의 해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근해어선 감척 등으로 인해 조합에서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일부 업종별수협이 조합원 수 미달로 해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특히 업종별수협의 경우 지구별수협에 비해 개인 회원이 아닌 법인 회원의 비중이 높아 조합원 수가 많지 않으므로, 조합원 수의 감소로 인한 영향이 큰 측면이 있었음.
- 현재 전국의 업종별수협은 총 19개로, 이 중 조합원 수가 가장 적은 조합은 대형선망수협이며, 해당 수협의 조합원 수는 16인(개인 3인, 법인 13인)임²⁾³⁾.

[수협 유형별 현황(2024년 말 기준)]

(단위: 인)

구분	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조합 수	91	70	19	2
조합원수	150,293	145,838	4,299	156
평균 조합원 수 /1개 조합	1,652	2,083	226	78

자료: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재구성

2) 대형선망수협의 경우 현재 조합원 수가 16명(18개 선단)이며, 이 중 조합원 2명(2개 선단)이 감척을 희망하고 있음.

3) 전체 수협의 조합원 현황은 [참고자료2] 참조

[업종별수협 조합원 수 현황(2024년 말 기준)]

(단위: 인)

연번	조합명	조합구분	조합원 계	개인	법인
1	굴수하식	업종별	1,080	1,074	6
2	서남해수어류양식	업종별	559	550	9
3	제주어류양식	업종별	448	313	135
4	민물장어양식	업종별	379	305	74
5	패류살포양식	업종별	379	379	0
6	명계수하식	업종별	361	361	0
7	전남서부어류양식	업종별	153	128	25
8	경남정치망	업종별	137	137	0
9	제1,2구잠수기	업종별	129	129	0
10	근해유망	업종별	120	119	1
11	대형기선저인망	업종별	105	103	2
12	제3,4구잠수기	업종별	89	88	1
13	근해안강망	업종별	88	88	0
14	근해통발	업종별	83	82	1
15	동해구기선저인망	업종별	55	55	0
16	서남구기선저인망	업종별	50	49	1
17	전남정치망	업종별	34	34	0
18	멸치권현망	업종별	34	27	7
19	대형선망	업종별	16	3	13

자료: 수협중앙회

□ 이에 개정안은 업종별수협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최소 조합원 수를 기존 1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김선교의원안) 또는 7인 미만(서천호의원안)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업종별수협이 조합원 수 감소로 인해 해산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적인 수행과 어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현재 수산물가공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7인 미만)를 참고하여 업종

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도 7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겠음.

[수협법상 최소 조합원 수 현황]

구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	100인 미만	15인 미만	7인 미만

자료: 해양수산부

(2) 준용규정의 일부 오기 수정

-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에 대해 규정된 해산사유 등을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 등 다른 유형의 수협에 대하여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준용규정에 인용된 지구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가 실제 근거규정에 따른 수(100인 미만)와 달리 200인 미만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이는 2017년 지구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를 기존의 2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개정하면서 준용규정에 대한 개정은 누락한 입법적 미비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이를 실제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이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수협법상 최소 조합원 수 개정 경과]

구분	'62.1.20 제정	'70.8.12 일부개정	'04.12.31 전부개정	'10.4.12 일부개정	'17.11.28 일부개정
지구별 수협	20인 미만	200인 미만	200인 미만	200인 미만	100인 미만
업종별 수협	7인 이하	20인 미만	20인 미만	15인 미만	15인 미만
가공 수협	7인 이하	7인 이하	7인 미만		

자료: 해양수산부

□ 다만, 현행법의 체계를 보면 지구별수협에 관하여 규정된 다수의 조문을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에 준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준용되어 업종별수협 등에 적용되는지 쉽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이므로 향후 조문 정비 등을 추진할 때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김선교의원안

[illegible]

“100인 미만”은 “10인 미만”
으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 조합등기부”로 본다.	----- -----. <u>부</u> <u>칙</u>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

참고 2

수협 회원조합별 조합원 수 현황 (2024년 말 기준)

(단위 : 명)

순번	조합명	조합구분	조합원 계	개인	법인
	합 계		150,293	149,750	543
1	여수	지구별	9,075	9,072	3
2	보령	지구별	7,964	7,962	2
3	고흥군	지구별	6,495	6,490	5
4	서산	지구별	5,596	5,587	9
5	부안	지구별	5,581	5,571	10
6	군산시	지구별	5,337	5,336	1
7	통영	지구별	4,612	4,609	3
8	경인서부	지구별	4,501	4,498	3
9	목포	지구별	4,184	4,181	3
10	제주시	지구별	4,090	4,087	3
11	거제	지구별	3,793	3,788	5
12	완도금일	지구별	3,698	3,698	0
13	안면도	지구별	3,525	3,525	0
14	남해군	지구별	3,302	3,302	0
15	진도군	지구별	3,139	3,124	15
16	울산	지구별	3,011	3,011	0
17	신안군	지구별	2,914	2,907	7
18	경기	지구별	2,670	2,669	1
19	완도소안	지구별	2,655	2,655	0
20	부산시	지구별	2,601	2,600	1
21	영광군	지구별	2,533	2,527	6
22	해남군	지구별	2,433	2,432	1
23	고창군	지구별	2,145	2,136	9
24	인천	지구별	2,106	2,106	0
25	하동군	지구별	2,083	2,083	0
26	성산포	지구별	2,083	2,083	0
27	장흥군	지구별	2,061	2,055	6
28	부경신항	지구별	2,060	2,060	0
29	당진	지구별	2,000	1,999	1
30	강진군	지구별	1,694	1,682	12
31	전남동부	지구별	1,665	1,665	0
32	마산	지구별	1,552	1,552	0
33	구룡포	지구별	1,544	1,542	2
34	대천서부	지구별	1,526	1,526	0
35	진해	지구별	1,489	1,489	0

순번	조합명	조합구분	조합원 계		
				개인	법인
36	(경남)고성군	지구별	1,476	1,476	0
37	기장	지구별	1,404	1,404	0
38	삼천포	지구별	1,370	1,370	0
39	나로도	지구별	1,353	1,352	1
40	한림	지구별	1,296	1,289	7
41	모슬포	지구별	1,267	1,267	0
42	경인북부	지구별	1,266	1,266	0
43	영흥	지구별	1,264	1,260	4
44	포항	지구별	1,185	1,185	0
45	태안남부	지구별	1,128	1,127	1
46	김제	지구별	1,080	1,080	0
47	굴수하식	업종별	1,080	1,074	6
48	강릉시	지구별	981	980	1
49	서천서부	지구별	973	973	0
50	서귀포	지구별	928	926	2
51	서천군	지구별	907	901	6
52	울진죽변	지구별	879	879	0
53	경주시	지구별	827	827	0
54	영덕북부	지구별	811	810	1
55	울진후포	지구별	784	784	0
56	(강원)고성군	지구별	736	734	2
57	거문도	지구별	692	692	0
58	강구	지구별	569	569	0
59	사천	지구별	562	562	0
60	서남해수어류양식	업종별	559	550	9
61	육지	지구별	490	490	0
62	양양군	지구별	481	480	1
63	삼척	지구별	468	468	0
64	제주어류양식	업종별	448	313	135
65	사량	지구별	445	445	0
66	창원서부	지구별	428	428	0
67	민물장어양식	업종별	379	305	74
68	패류살포양식	업종별	379	379	0
69	추자도	지구별	372	372	0
70	속초시	지구별	361	361	0
71	명계수하식	업종별	361	361	0
72	울릉군	지구별	356	356	0
73	동해시	지구별	353	353	0
74	삼척원덕	지구별	224	224	0
75	죽왕	지구별	211	211	0
76	대포	지구별	194	193	1
77	전남서부어류양식	업종별	153	128	25

순번	조합명	조합구분	조합원 계		
				개인	법인
78	경남정치망	업종별	137	137	0
79	냉동냉장	수산물가공	131	20	111
80	제1,2구잠수기	업종별	129	129	0
81	근해유망	업종별	120	119	1
82	대형기선저인망	업종별	105	103	2
83	제3,4구잠수기	업종별	89	88	1
84	근해안강망	업종별	88	88	0
85	근해통발	업종별	83	82	1
86	동해구기선저인망	업종별	55	55	0
87	서남구기선저인망	업종별	50	49	1
88	전남정치망	업종별	34	34	0
89	멸치권현망	업종별	34	27	7
90	통조림가공	수산물가공	25	3	22
91	대형선망	업종별	16	3	13